

보도시점

2024. 4. 25. (목) 08:30 배포

2024. 4. 25. (목) 08:30

'장애인 주차구역' 규격에 맞춰 달라니, 없애버려?"... 장애인 분통

- 국민권익위, 장애인 주차구역 없애도록 계도한 성남시에 대하여 '시정권고'

□ 법적의무 없이 설치된 장애인 주차구역을 없애도록 계도한 것은 잘못된 것이니 다시 설치하도록 행정지도 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 왔다.

국민권익위원회(위원장 유철환, 이하 국민권익위)는 장애인 주차구역을 규격에 맞게 설치해달라는 민원에 대하여 오히려 법적 설치의무가 없으니 장애인 주차구역을 없애라고 계도한 경기도 성남시에 장애인 주차구역을 다시 설치하도록 행정지도 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.

- □ A씨는 2023년 9월 성남시 소재 주차장 건물에 있는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하다가, 주차구역 폭이 좁아 주차에 어려움을 겪고, 2023년 9월 국민권익위에 규격에 맞게 장애인 주차구역 폭을 넓혀달라는 민원을 신청하였다.
 - ※ 해당 주차구역과 법상 장애인 주차구역 규격기준 사진(붙임)

이에 성남시 담당 공무원은 2023년 10월 이 주차장 건물을 방문하였고, 이 건물은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(이하 장애인등편의법) 시행(1998. 4. 10.)되기 이전인 1997년경 사용승인된 건물이어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. 담당 공무원은 주차장 건물 관리자에

게 해당 장애인 주차구역을 없애고, 일반 주차구역으로 변경할 것을 계도하였다.

이에 따라 주차장 건물 관리자는 해당 장애인 주차구역의 장애인 주차 표시를 삭제하고, 일반 주차구역으로 변경하였다.

※ 변경 전후 관련 사진(붙임)

그런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, 법적 의무 없이 설치된 장애인 주차구역도 유효한 주차구역이고, 지속적인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규격에 맞게 설치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.

□ 국민권익위 조사결과, 성남시는 보건복지부 지침과 달리 이 주차 장 건물 관리자에게 장애인 주차구역을 없애라는 계도 조치와 함께, 장애인 주차구역을 없애지 아니하는 경우에 시정 명령 등의조치를 하겠다는 사전 통지서까지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었다. 이 주자창 건물은 총 130여대의 주차구역이 있고, 병원 진료 환자등이 이용하는 것으로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가 필요하였다. 그리고 이 주차장 건물에 1개의 장애인주차구역을 다시 설치하도록 행정지도하는 것은 건물 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.

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성남시에 이 주차장 건물에 장애인 주차 구역이 규격에 맞게 다시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것을 시정권고했다.

□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"장애인 주차구역을 관리·유지해야 하는 담당 공무원이 오히려 장애인 주차구역을 없애버린 사례다"라며, "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공직자들의 위법·부당한 행정을 국민에게 알려드리고,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하겠다"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복지노동민원과	책임자	과장	안정륜 (044-200-7461)
		담당자	조사관	유상철 (044-200-7422)







□ 해당 주차구역과 법상 장애인 주차구역 규격기준



□ 변경 전후 현황

